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합54917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정재현

변론 종결 2021. 3. 5.

판결 선고 2021. 4.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973,406원과 그 중 922,397,164원에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1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 2016. 5. 12.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11.까지(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10.로 변경됨), 2 2016. 5. 24.경 체결한 신용보증 한도금액 1,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18. 5. 23.까지인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1 2016. 5. 24.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3.까지(두 차례의 조건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23.로 변경됨), L 2016. 5.24.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3.까지(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23.로 변경됨), © 2017. 3. 29. 보증금액 36,000,000원, 보증기간 2018. 3. 28.(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기한 2019. 3. 28.로 변경됨)까지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모든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이율로 계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합계 1,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피고 회사는 2019. 3. 5.경 이후부터 D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9. 4.24. 위 대출금채무 전체에 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7. 11. D은 행에 922,397,1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원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지출한 비용(대지급금)은 6,208,582원이고, 위약금은 1,367,660원이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B은 2018. 10.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접수 제110349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8. 25. 1순위로 D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F유한회사에 658,732,731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G에게 360,000,000원,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64,011,3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G, 피고 C의 위 각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0. 8. 27. 피고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761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2020. 7. 10.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973,406원(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922,397,164원 + 대지급금 6,208,582원 + 위약금 1,367,66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922,397,1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8. 10. 11.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한 2019. 4. 24.경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7. 11.경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1) 채무자의 무자력

가)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1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10. 11.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남양주시 K아파트 L호 등 합계 1,639,87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1,039,870,000원 + 위 아파트의 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929,973,406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금 600,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84,917,000원,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3,170,712,675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10. 11.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는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적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8. 10. 11.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 C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가액은 합계 469,408,000원 상당이고 피고 B이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전체를 840,000,000원에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1,080,000,000원(= D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을 하회하므로, 담보가치가 남아 있지 않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로 체결된 이 사건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1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10.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1,039,870,000원인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자 D은행의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각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하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D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액수는 2019. 8. 21.을 기준으로 합계 617,313,006원(= 2016. 9. 29.자 대출금 원금 600,000,000원 +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17,313,006원)이고, 피고 B은 2019.3. 29.경부터 위 대출금에 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점, ② 위 G은 D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7790)에서 '피고 B에 대하여 2015. 1.부터 2017. 6.까지 합계 211,9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2.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G의 관련 사건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피담보채권의 액수인 약 811,900,000원 상당(= 600,000,000원 + 211,900,000원)을 공제한 약 227,970,000원(= 1,039,870,000원 - 811,9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13.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일부 취소가 인정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과는 달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 금원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된 사안이므로 해당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3. 5. 현재 929,973,406원(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922,397,164원 + 대지급금 6,208,582원 + 위약금 1,367,660원) 및 그 중 922,397,164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9. 1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12,534,492원($= 922,397,164원 \times 0.08 \times 6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3. 5.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64,060,339원($= 922,397,164원 \times 0.12 \times (1 + 176/365)$)의 합계인 1,106,568,237원($= 929,973,406원 + 12,534,492원 + 164,060,339원$)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4,11,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외에도 D은행이 2019.6.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992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청구금액 597,260,386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M)에서 D은행은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20.8.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 중 피고 C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은행의 위 채권액만 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는 피고 B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B이 지급 기일의 연기와 분할변제를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면서 담보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3호증,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은 1,039,870,000원에 불과함에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액수는 31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어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남양주시 K아파트 L호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080,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존재하는 등 피고 B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K아파트 L호를 처분하여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당시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박상인, 판사 김태진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남양주시 [] 전 996㎡

2. 경기도 남양주시 [] 동

[도로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

일반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1층 250㎡

3. 경기도 남양주시 [] 동

[도로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

일반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1층 250㎡

4. 경기도 남양주시 [] 전 988㎡